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(안 제3조제7호 신설)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(안 제4조제6호 신설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의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됨.

#### 2) 주요 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(안 제3조제7호 신설)
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함
  - 금천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 : 20명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11. 9. 15 제정)

보훈대상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, 단순 사고·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
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(안 제4조제6호 신설)

#### □ 서울시 타구 제정현황

- 보훈보상대상자도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
  - 서울시 : 5개 자치구(성동구, 성북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)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용품 지원
  - 서울시 : 7개 자치구(종로구, 도봉구, 광진구, 구로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적용범위 추가 및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